

##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6월 9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



### 1. 제정이유

「청소년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
나.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위촉,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함  
(안 제4조 ~ 6조).

라.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).

마.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).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)3396-8157   팩스 : 02)3396-9055
- E-mail : queen@junggu.seoul.kr

##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설치 및 기능)** ①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청소년 관련 정책·사업 수립 및 분석·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
2.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
3.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
4.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의 추진
5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,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

**제5조(권리와 의무)**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구성 및 운영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을 통해 나이, 성별, 인종, 장애, 학력, 병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
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위촉)**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·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해촉)**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
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

3.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

4.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

2.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

3.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
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 이내)의 상(喪) 또는 결혼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,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**제7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회의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,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의견수렴 등)**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구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수당)**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단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표창 등)**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, 문화탐방·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**제12조(위탁)**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